

V. 토론문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진국

1. 용어의 정리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주라 함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사업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근로계약의 체결), 제7조(해고), 제10조(포괄산정 임금계약의 금지), 제12조(임금대장), 제14조(휴업지불) 등에서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제5장이하에서는 다시 '사업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용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제5조(근로계약의 체결)규정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부과는 건설근로자 고용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그런데 제21조(고용에 관한 문서의 교부)에 의하면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고용기간 및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등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1조 소정의 '고용에 관한 문서'와 제5조 소정의 '근로계약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법규정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 예컨대 제22조(서류 비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에게 사업장내에 근로계약서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3. 제6조(불법하도급업자에 의한 고용금지)규정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업자와의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를 하고 무효로 된 근로계약을 그 직상수급인과 체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불법하도급 타파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무효로 된 근로계약은 직상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에 의하게 되면 결국 직상수급인은 하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또는 사용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으로서 불법하도급을 자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4. 제7조(해고)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약기간내에 해고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 및 제27조의 2(해고의 예고)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또한 외형상으로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체는 계속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계속근로를 하게 하는 탈법행위의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과 달리 근로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해고의 예고규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상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 규정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제10조(포괄산정임금계약의 금지)규정과 관련하여

포괄산정임금계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최근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총액임금방식으로 임금협약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과연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며, 특히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제36조(벌칙)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6. 제11조(임금의 변제)규정과 관련하여

도급공사의 경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자고 하는 것은 임금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다.

따라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에게 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2차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아니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관계(지휘감독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7. 제13조(평균임금)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8. 제4장(산업재해)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산재다발현실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동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소정의 아래 규정과 충돌이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확대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5호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제7호 :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9. 제5장(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관련하여

훈시적인 규정, 실효성 확보

10. 제6장(건설근로자 실업급여)과 관련하여

제6장의 규정이 전체 건설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일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제23조(실업급여의 적용)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30조 특례조항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고용보험법 제30조(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례)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의 취지로 보면 일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7조(적용범위)소정의 적용제의 사업장과 제8조 소정의 (적용제의근로자)소정의 적용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도 불분명하다.

II. 제7장(건설근로자수첩)과 관련하여

제31조(건설근로자수첩 발급 의무) 제1항이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기간, 인원, 직종, 임금등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그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만으로는 사업주가 '누구에게'(근로자에게?), '무엇을'(건설근로자수첩?)발급한다는 것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동 제3항은 "근로복지공단은 건설근로자 수첩의 발급, 갱신 및 관련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제1항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건설근로자들에게 건설근로자수첩의 소지가 강제되는 것인지, 또한 건설근로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장애인복지의 체계와 장애인복지법체계

권도용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I. 현대 장애인복지의 형성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약30년간을 선진 제국들은 [經濟開發 第一主義政策]을 해 온 결과로 사회 전면적인 붕괴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반성하고 1960년 후반 부터 經濟開發 第一主義로 부터 균형 있는 사회발전정책(복지사회 정책)으로 대전환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다. 복지는 어느부분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회에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균형있게 발전된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까지 선진국들은 의료, 교육, 직업 등의 재활서비스를 수단으로 경증장애인 중심의 사회재활을 실시했고, 중증장애인은 의료서비스에 한정된 수용시설 중심의 보호를 해 왔다.

1970년대 선진국들이 경제개발제일주의 정책을 균형있는 복지정책을 대전환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장애인 인권선언기를 맞이하면서 종래의 경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선진 각국들은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정책을 강화했다. 예를 들면 ①영국은 1970년에 [만성병 및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육구에 대처했으며, ②서독은 1974년에 [중증장애인법]을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정책을 강화했고, ③미국은 1973년에 1920년 이래 반세기를 걸쳐 시행해 온 [직업재활법]을 [재활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시켰다. [재활법]의 성립은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 개념을 확대시킨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76년 제31차 UN총회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UN 장애인10년]으로 결정하여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다시 [UN 장애인10년]의 연장선상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세아 태평양지역 장애인10년]으로 채택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차원에서 장애인복지가 체계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의 장애인복지는 크게 5가지의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장애인의 수용시설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시켜야 하며 운영방법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둘째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 이용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제 조건을 일반사회속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취업, 소득보장, 주택확보, 공공건축물 개선, 이동시스템개선 등이 장애인 당사

자, 가족, 전문가, 주민의 참여와 국가 책임주의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비장애인과 대등한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인(주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 획득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장애인 자신들이 정신적 내면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사회의 환경개선에 따른 공존 조건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신의 정신적 내면적 성숙없이 사회통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상의 과제는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社會統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 장애인복지의 과제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과제이다.

그런데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문제란 장애라고 하는 인간적 문제이며, 이 장애(즉 총체적 장애로서 社會的不利)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個人的 障礙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社會的 障礙로 분리되고 역으로 이들 두 개의 장애(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가 통합되어 장애의 총체적인 구조체계(SYSTEM)를 이룬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다음의 <표1>과 같이 장애체계(장애system)에 대처해서 장애를 해결(변화, 조치)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해 나가는 행동과정으로서의 체계(복지 system)을 이룬다.

<표1> 統合的障礙體系에 대처하는 障礙者福祉體系

統合的 障礙 體系(System)		障礙者福祉體系(System)		障礙者福祉 目的體系	
統合 ↔ 分析		統合 ↔ 分析		手段의 目標	窮極的 目標
社會的 不利	個人的 障礙	障礙者 福祉	個人 能力 開發 部門	全 人 的 能 力 開 發	社會 統 合
	身體 障礙		醫療 再 活 領域		
	意識 障礙		教育 再 活 領域 職業 再 活 領域 心理 再 活 領域 再 活 社會 事業 領域		
社會的 障礙	物理的 障礙 ① 建築物 ② 移動 System ③ 通信 System	社會 開發 部門	物理的 環境 改善 領域 ① 建築物 ② 移動 System 改善 ③ 通信 System 改善	社會 環境 改善	社會 統 合
	文化的 障礙 ① 象徵 文化 環境 ② 規範 文化 環境		文化的 環境 改善 ① 象徵 文化 環境 改善 ② 規範 文化 環境 改善		
	社會 心理的 障礙 (偏見)		社會 心理的 環境 改善 ① 國民 意識 改善		

1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 과정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비장애인(非障礙人)이 가지고 있지 않은 (障礙)라고 하는 인간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과정 중 하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개인적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에 공헌하는 영역은 ①의료재활, ②교육재활, ③직업재활, ④심리재활, ⑤재활사회사업, ⑥소득보장 등의 영역이다.

2 사회환경 개선(공존사회실현)과정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환경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접근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사회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사회환경을 (사회적 장애)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과정중 하나는 (사회적 장애)에 대처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사회통합)이 가능한 공존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회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복지영역은 ①물리적 사회환경개선영역, ②문화적 사회환경개선영역, ③사회심리적 사회환경 개선영역 등이다.

II.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 및 통합법안

앞에서 본대로 장애인복지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통합개념을 가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개념을 가진다.

따라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이 통합적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통합법이라 함은 관련법률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총체적이고 통일적으로 포함(통합)되므로써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법의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력체계를 이루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통합법으로서 어느정도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관계법률들과의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고 시행될 수 있는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포괄적인 체계를 갖춘 통합법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요청되며, 본 법이 개정된 후에는 관련법률들의 통일적인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

다. 개정을 요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표 2>와 같이 각 영역별 내용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표2> 장애인복지관련 법률의 체계

장애인 복지체계	통합법안의 각 영역별 구성내용	관 련 법 률
장애인 개인의 능력개발 부문	1. 의료 ① 장애예방 ② 조기발견·조기치료 ③ 재활치료 ④ 의료재활시설 ⑤ 전문인력 자격,배치 및 처우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모자보건법, 보장구법, 정신위생법, 의료법
	2. 교육 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② 통합교육 ③ 교육시설	교육법, 특수교육법, 사회교육법, 보육법
	3. 직업 ① 직업재활체계 ② 장애인의 노동권 ③ 국가 등의 고용의무 ④ 장애인고용 지원 ⑤ 생산품 구매	직업훈련법, 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4. 소득보장 ① 최저생활보장 ② 추가적 소득보장 ③ 경제적 부담경감 ④ 자금의 대여 ⑤ 생업지원 ⑥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 ⑦ 우표류 판매업의 허가	연금법,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연금법(미), 제수당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관세법, 상속법, 소득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5. 복지용구 ① 복지용품교부 ② 복지용품업체의 육성 ③ 복지용품의 제조, 수리업의 허가 ④ 복지용품기사의 자격 및 배치 ⑤ 복지산업진흥원	

사회개발 부문	6. 사회환경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교육 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통 신법, 건널목개량촉진법, 문화예술진흥 법, 방송법, 사회교육법, 교육법
	① 건축물	
	② 주택	
	③ 문화적환경	
④ 수화자막방송		
⑤ 정보에의 접근		
⑥ 점자 및 음성도서의 보급		
⑦ 수화통역 등		
⑧ 사회심리적 환경		
⑨ 체육의 진흥		
7. 이동		
① 이동시설		
② 이동수단		
③ 주차장		
8. 복지시설 및 단체		

그리고 모든 관련법률을 통합한 장애인복지의 기본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
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기본법'으로 개칭하고 통합구조를 <표3>과 같이 구성한다.

<표3>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구성내용

통합법 명칭	통합법 구성 내용
장애인복지기본법	<p>총칙</p> <p>① 목적 ② 적용범위 ③ 개인의 존엄 등 ④ 사회통합에의 노력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⑥ 복지급여청구권 ⑦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 ⑧ 장애인복지위원회 ⑨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⑩ 국회에의 보고</p> <p>개인능력 개발부문</p> <p>1. 의료 2. 교육 3. 직업 4. 소득보장</p> <p>사회환경개선 부문</p> <p>5. 사회환경 6. 이동 7. 복지시설 및 단체</p> <p>기타조치</p> <p>장애인차별의 금지</p> <p>① 명예훼손 ② 학대의 금지 ③ 시설설치반대 ④ 반차별</p>

장애인복지기본법 주요골자

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의료, 교육, 직업, 소득 등의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건축, 주택, 이동, 통신 등의 사회환경개선 사업을 정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지능장애, 중요기관기능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적장애를 규정함 (안 제2조)
3. 각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 (안 제6조)
4.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함 (안 제7조)
5. 매년 정기국회에 다음 연도의 시행할 장애인복지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
6. 태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등록 및 정기검진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화학물질, 약물오염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 (안 제11조)
7. 분만과정과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2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
8. 장애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일정인구에 비례한 적절수준의 재활병원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14조)
9. 장애인교육에 있어 영·유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교육, 중등학교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명시함 (안 제16조)

10. 장애인이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 장애종류,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에 따른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교육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 2항, 3항)

11. 장애인의 적절한 직업진로 개발을 위한 직업지도,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평가 및 직무분석, 직업평가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취업후 원활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 (안 제19조)

12.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일반고용이나 보호고용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천명함 (안 제20조, 제21조)

13.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24, 제25조)

14.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31조)

15. 장애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하도록 함 (안 33조, 34조)

16. 장애유형별로 원활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한 편의증진과 장애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비하도록 함(안 35조 1항)

17.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변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등 정규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정에 복지교육과목을 설치하도록 함 (안 38조)

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기차 및 전철의 역사, 버스의 정류장, 공항 및 항만 등 대중 교통시설을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도로, 지하도, 육교를 설치함에 있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19. 지역적 특징이나 장애의 특성에 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이동수단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42조 2항)

20. 공공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 소유, 관리하는 사람은 동 시설의 전체 주차 숫자의 일정비율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동 건물의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함 (안 43조 1항, 3항)

21. 복지용품의 제조 또는 수리업체는 복지용품기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 (안 제47조)

22. 복지용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복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안 제48조)

23. 장애인시설에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복지연구시설을 두도록 함 (안 제49조 4항, 7항)

24. 의료, 교육, 직업, 소득 및 사회환경 등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한다. (안 제57조)

25.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학대의 금지, 시설설치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 (안 제64, 제65조)

2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차별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안 제66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내용

이 백 수

1. 시작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성폭력특별법은 형사특별법(실체법)의 성격을 띤 법률이기는 하지만 사회법적인 내용과 형사정책 및 절차법적요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에 대하여 "백과사전식 법률이다.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제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친고죄 규정의 상당부분 폐지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케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비판이 비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성폭력범죄는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당사자인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윤리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법만으로는 규율과 예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에 대하여 우리보다는 개방화되어 있는 유럽 등 서구국가도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과 성범죄를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지 오래이다. 여기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여러가지 성격의 범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형사법적인 시각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비판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사회법의 등장으로 공·사법의 구별이 희석되어가고 있는 현대입법의 추세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특별법의 제정과 규정형식은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성폭력특별법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들지만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성폭력특별법 규정의 개정은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개정방향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작업은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성적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성년자의 보호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파괴되는 가정 및 사회윤리의 최저선을 한정짓는 데에 개정의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 성폭력특별법의 미흡한 규정을 손질하고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되어왔던 처벌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제244조(음화등의 제조)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성폭력범죄'의 유형에서 삭제(개정안 제2조)하였고, 성폭력특별법 제4조와 제21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개정안 제35조), 성폭력상담소의 설치, 경비의 보조, 의료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다(개정안 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3조).

3. 개정내용

가. 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

어떠한 범죄이든 범죄자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는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임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성폭력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 성폭력특별법의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개정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형법의 개정에 맞추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내용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추가하였다(개정안 제16조 제2항).

나. 피해자 보호 및 치료

1)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절차참여권(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의견진술권등)의 인정,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에 대한 특례 인정, 재정신청제도 및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이 주장되어 왔다.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와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고,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은 이미 형사소송법 제294조에서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에게만 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을 동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개정안 제22조의 2).

재정신청제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제도를 도입해 보았다(개정안 제22조의 3). 아울러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특수환경에 있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제를 도입하였다(개정안 제22조의 4). 신고의무를 강제할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다(개정안 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3조 등). 물론 이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국가 등에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므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처벌규정의 보완 및 신설

1) 성폭력특별법 제4조는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처분금지를,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개정안 제35조의 제1호 제2호). 법제4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와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등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 제21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이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처벌의 실익이 있다고 본다.

2) 특별법 제5조 및 제10조의 구성요건 중 입법의 흠결로 지적되어 왔던 미수범을 추가하였고(개정안 제5조, 제10조), 형량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삭제하였다(개정안 제5조의 제1항).

3) 법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확장하여 의붓아버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존속등 연장의 친족에 의한 범죄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간의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하였다(개정안 제7조). 또한 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였다(개정안 제8조 제2항).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개정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의 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반의사불죄죄 규정을 마련하였다. 법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수범 규정을 삭제하였다(개정안 제12조).

4) 서울대 우조교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성희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성희롱'의 처벌기준과 한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성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실정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처벌요건을 정해 보았다.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래도 처벌대상이 되는 '성희롱'의 기준은 있어야한다는 판단하에 개정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게 되었다.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성희롱의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근무조건 조성의무와 관련된 것이고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희롱'과는 거리가 있다. '성희롱' 특히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처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본다. 위 조항의 악용 및 남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4. 마치며

개정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기가 어려웠고 특별법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러나 성범죄가 우리사회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다소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의 존치와 합리적인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성개방 풍조와 침해된 성적자율권의 보호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개정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기대한다.

사업 및 업무보고

(9월20일~11월5일)

1. 모임 및 주요활동보고

- 가. 9월 정기월례회 개최 : 9. 20 (금) 오후6시반 민변사무실
- 최영도 회장 외 31명 참석
- 나. 10월 정기월례회 겸 등산 및 민변 제9차년도 중간평가를 위한 MT 개최
: 10. 26(토)~10. 27(일)
- 다.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개최
: 11. 2 (토)~11.3(일)

2. 사무국 보고

성명서 발표

- '구 영화법 위헌 결정에 즈음한 민변의 견해' 발표 / 10. 14 (월)
- 12·12 및 5·18 재판 관련 피해자신술권 신청 고등법원 형사1부(항소심 재판부) / 10. 14 (월)
- 피해자 진술권 신청자 : 김준봉, 김동원, 김기수, 정수만, 강길조 등 5인
- 박기서씨 변호인단 구성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신청 / 10. 26 (토)

번론배당

- ① 정창호(군인) : 부산외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관련 - 국보 / 김철준 회원
- ② 박문선(조선대공업전문대) 외 4명 : 한총련 통일축전 참가-집시 등 /
- ③ 김희영(수기사) : 부산외대 자주대오 사건 - 국보 / 안봉진 회원
- ④ 조봉호 외 7명 : 노진추 관련 - 국보 / 양영태, 김문희, 최원식, 문병호 회원
- ⑤ 락주영 외 1명(동국대) : 동국대 학보 칼럼 관련(간첩사건 게재) - 국보 /
- ⑥ 김연석(서울시립대 총학생회 회장) : 국보 / 하영석 회원
- ⑦ 한총련 사건 추가접수

3. 상임위원의 보고

기획위원회

회원위원회

- ① 정웅태, 조상희, 윤학 변호사 회원가입 신청 : 11. 4 (월)

출판홍보위원회

- ① 정기모임 : 10. 2 (수) 민변사무실
민중사회를 위한 변론제작의 건, 민변 홍보브로셔 제작의 건, 9,10월 소식지 편집방향 논의
무죄사건변론집 편집 및 출판방향 논의 - 무죄사건 변론집은 회원 내부용으로 변론기, 첨부
자료 형식의 자료집으로 발간. 출판시에는 변론기와 자료를 믹서하는 편집과정을 거쳐 일반인
이 읽기에 좋은 형태로 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무죄사건 변론팀에 의견을 내
기로 함.

대의협력위원회

- 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
: 10. 4 (금) 오전10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 ② 여연, 가정폭력방지법 법률(안) 내부설명회 : 10. 29 (화) 오전 8시 YMCA 자원방
- ③ 한총련 비대위, 하루주점 참가

국제연대위원회

- ① 인권협, 국제앰네스티연석회의 : 9. 25 (수) 덕수합동법률사무소
- ② 정기모임 : 10. 10 (목) 오후 7시 민변사무실
고문방지협약반박보고서 검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단체 2차보고서 작성 건
논의, 국가보안법 캠페인 관련사항 논의, 아시아인권대회 참석여부 논의(국제연대위원 전
원참석 고려)
- ③ 고문방지협약반박보고서 영문본 작성 및 UN 고문방지위원회 위원에게 발송
: 10. 19 (토)
보고내용 : 한국정부가 95년 12월에 UN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에 대해서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작성
한 반박보고서
- ⑤ 정기모임 : 11. 5 (화) 오후 7시 민변사무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단체 2차보고서 작성 건 논의, 호주대사관 자료송부 및 요
청, 동티모르 연대모임에 10만원 지원 결정

4. 상설특별위원회

노동위원회

- ① 공대위 운영위·실행위 연석회의 : 9. 23 (월)
- ② 건설일용노동자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 9. 23 (월) 오전10시 세실
- ③ 공대위 전문가위원회 회의 및 전문가 공동선언 참가 : 9. 24 (화)
- ④ 정기모임 : 10. 2 (수) 서라벌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참여, 노사관계개혁 노개위 활동에 대한
성명서를 이원재 위원장이 제작하기로 함,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공대위에
서 결정한 범국민선전주간(10. 14~19)에 변호사 서명동원을 고려하기로 함
- ⑤ 정기모임 : 10. 16 (수) 서라벌
- ⑥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공대위 대표자회의 10. 21 (월)
상황보고 및 공대위 활동경과 보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및 지역공대위와의
관계정립에 관한 건 논의 등 향후사업을 논의
- ⑦ 정기모임 : 10. 23 (수) 서라벌
건설일용노동자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 - 참석한 노동위원들이 김수환 국회
의장 앞으로 보내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8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에 김진국 회원이 참여기로 함, 유덕상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구속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성명서 초안은 김인희 회원이 작성하기로 함

언론위원회

- ① 10. 9 (월) 모임의 언론위원회 명의로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각 사회단체에 발송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언론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등과 공대위를 구성하여 법적
문제, 사회적문제, 기술적인 문제, 대응방법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논의
- ② 10. 18 (금)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③ 10. 19 (토)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
- ④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 개최(민교협, 기자협회, 경실련 등과 공동개최)
: 10. 22 (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
- ⑤ 정기모임 : 10. 28 (월)
전자주민카드 관련 활동사항 보고, 정간법 개정의견서 초안을 이형근 회원이 작성, 통합방
송법과 관련하여 박형상, 이상경 회원이 의견서 초안 작성, 지난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민교협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공개법 공청회에 대하여 평가하고 공청

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내기로 함

사회복지위원회

- ① 한국장애인복지공단협 주최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발제 / 9. 21 (토) 오후2시 국회소회의실, 박주현 위원장 토론자로 참가
- ②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 운동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회의 참가

경제정의위원회

- ① 정기모임 : 10. 8 (화) 시민종합법률사무소
김석연 회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표 및 설명,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함, 차규근 회원, 점포임대차보호법안 발표 및 토론
- ② 공정거래법 개정공청회
모임의 경제정의위원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 : 10. 17 (목) 오후6시반
- ③ 정기모임 : 10. 22 (화)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점포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과 점포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차규근 회원과 신종원 실장이 의원입법에 관한 검토의견을 준비하기로 함,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 회원이 경제정의위원회에 가입함.

환경위원회

- ① 정기모임 : 10. 2 (수) 민변사무실
원자력법개정안 입수 배포,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김호철 회원이 다음 모임에서 준비하기로 함, 사회호 방류금지 가처분 관련 준비상황보고 : 윤종현 회원, 남부정유소 행정소송건에 대한 담당 의뢰 : 이재명 회원(남부정유소건에 관한 개괄적 배경설명과 앞으로의 진행 대책에 대한 논의)
- ② 정기모임 : 10. 17 (목) 민변사무실
사회호 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함, 조홍식 변호사 환경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함

5. 임시특별위원회

5·18 대책 임시특별위원회

- ① 정기모임 : 9. 30 (월) 낮 12시 민변사무실
5·18 향후 사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내용공유

- ② 정기모임 : 10. 11 (금) 저녁 6시반 민변사무실
재판방청, 1심 평석 준비관련 논의
- ③ 정기모임 : 10. 18 (금) 저녁 6시반 민변사무실
재판방청, 1심 재판사항 및 평석준비
- ④ 5·18 향후 사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5·18 향후 사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차 간담회 : 9. 23 (월) 민변회의실
5·18 향후 사업방향 논의 - 전·노 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논의
- 5·18 향후 사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3차 간담회 : 10. 7 (월) 민변회의실
재판모니터팀 구성, 형사피해자 진술권 행사 관련 논의
- 5·18 향후 사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4차 간담회 : 10. 28(월) 민변회의실
과거청산추진 형식과 일정 논의

안기부법 개정대응 임시특별위원회

특위구성 : 고영구(위원장), 윤종현, 강금실, 김원일, 김동균, 장주영, 천낙봉, 김병주(위원)

- ① 정기모임 : 10. 2 (수) 민변사무실
대응논리개발팀, 기획팀, 자료팀 등으로 위원회 역할 조정, 국감이 끝나는 10. 18 (금)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작업 진행하기로 함.
- ② 안기부법 개정대응 시민·사회단체 비공식 간담회 개최 : 10. 16 (수) 민변사무실
- ③ 안기부법 개정대응 시민·사회단체 2차 간담회 개최 : 10. 23 (수) 민변사무실

형사(무죄)사건 변론집 자료집 발간팀

- ① 정기모임 : 10. 1 (화) 낮 12시 민변사무실
- ② 정기모임 : 10. 16(수) 낮 12시 민변사무실
- ③ 정기모임 : 10. 22(화) 낮 12시 민변사무실
- ④ 정기모임 : 11. 5 (화) 낮 12시 민변사무실

민변1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 ① 정기모임 : 10. 1 (화) 저녁 6시반 민변사무실
- ② 정기모임 : 10. 14(월) 저녁 6시반 민변사무실

민변 제9차년도 중간평가

사무국

1. 평가의 필요성 및 방향

가. 민변의 위상 논의와 사업의 추진·평가의 결합

- 민변의 위상 및 장기적 전망은 쉽게 정리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단계에서 일용 몇 가지 가능한 전망을 설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민변의 위상 및 장기적 전망을 현실적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그동안은 위상 논의의 따로, 일 따로 한 듯함. 즉 민변의 사업은 일정한 목적의식하에 추진되기 보다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별 평가없이 끝나는 면이 강했음
- 민변의 위상을 ①변호사단체 ②인권단체 ③법률전문가단체 ④민주사회단체라는 4가지 차원에서 일단 설정하고 그동안의 사업을 평가해 보면서 문제를 제기, 논의해 보고, 개선책을 모색해 보기로 함

나. 사업과 조직의 불일치 해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변의 각 상설조직을 통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조건에 따라 임시조직 또는 회원 개인의 차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방식은 사업의 일회성, 불연속성 등을 결과하고 몇몇 회원에게 일을 집중케 함으로써 사업 자체의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수행을 어렵게 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조직 및 개인 역량을 축적·강화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일의 양에 비하여 활동회원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조직이 사업수행의 관점에서 정확히 구성되어 있지 않은 탓도 크다고 보여짐. 따라서 과감히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다. 회원의 활동 저조 및 동질성 약화

- 활동 의사 있는 회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지 못함으로써 회원의 잠재적 활동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장하거나 소진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일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듯 함
- 회원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회원 간의 동질성 내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2. 사업 및 조직 평가와 문제제기

가. 변호사단체 차원

(1) 단체의 기본 성격에 대한 합의: 어떤 변호사단체이어야 하는가

- 민변의 기본적 위상이 변호사단체이어야 함에는 별 이견이 없는 듯 하나 "어떤 변호사단체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의 중점방향과 회원 가입조건 및 확대 범위가 달라짐
- 다음으로 다른 민주단체와의 차이는 어떠한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민주법학 내지 민교협 등 교수단체의 차이는? 인권운동 사랑방 등 인권단체와의 차이는? 참여연대 내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의 차이는?
-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개별화·보수화 경향, 고용구조의 불안정 및 병리현상 심화, 시민사회운동의 파편화 경향에 따른 상대적인 변호사의 활동 가능성의 확대, 변호사가 늘어나고 그 지위가 하락되어 가는 법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기획위원회 등 일정 조직 단위에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함

(2) 조직사업

- 민주적 의사 결집 방안: 회원의 의사에 기반한 사업의 전개 원칙 정립 필요. 그 현실적 방안은? 월례회 -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유인력 확보책은? 다른 대안은?
- 회원조직관리: 회원의 확대 속에서 구심력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관리의 방향과 방법은? 그 담당조직은?
-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의 방향은? - 조직기능, 정보전달기능 - 가치있는 정보의 수집방법은?

(3) 변론사업

- 변호사단체로서의 고유한 독자적 사업. 변론매뉴얼 발간, 형사사건 자료집 제작, 한총련사건 변론매뉴얼 작성, 사무실별 배당체제 도입 등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기본적 전제인 변론사업의 의의와 목표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민주화운동가들의 형사사건 등 이른바 시국사건 변론?(시국사건의 정의는?) 일반적인 법률구조차원의 변론? 적극적인 인권운동으로서의 기획변론? - 왜 변론을 하는가? 오는 사건은 전부 맡아야 하는가? 변론의 공통처리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변론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변론연구 필요 - 중요사건의 경우 회원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변론방향 및 기술을 연구·토론하여 진행할 것(한총련 변론매뉴얼 작성, 5·18재판의 피해자진술권 행사 등은 고무적인 일). 변론사건 종결 후 '변론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중요사건의 경우 공소장, 판결문, 변론요지서 등 첨부)하는 것을 합의할 필요가 있음

(4) 사법관련 사업

변호사단체로서의 고유한 기본 사업이 변론사업과 사법관련 사업이라고 할 때, 특히 외부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사법관련 사업이라 할 때 민변의 사법관련 사업의 부진은 민변의 근거를 위협케 하는 중대한 문제임. 먼저 사법관련 사업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입법 및 법제 문제, 형사사법 및 행정제도. 그 외에 사법제도개혁, 사법감시 문제는 계속 회피할 것인가? 다음으로 사업의 구체적 방법은? 담당 조직의 격상과 비중있는 회원의 배치 필요

(5) 출판·홍보사업

출판·홍보사업의 목표와 방향은? 기존 매체인 월간 소식지 '이 달의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등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편집의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대외용 매체 개발의 필요성 - 법조의 확대에 따라 법조인을 상대로 한 매체는?(변협과의 연대?) 시민을 상대로 한 정기적 법제 및 인권 소식지는?(민주법학, 인권운동 사랑방 및 대학생 인권단체와의 연대는?) 부정기 인권잡지(이론지 및 실태보고서)는? 문고판 '시민법률문제시리즈'는? - 필자를 어떻게 구하여 조직화할 것인가? 외부인력과 협력하여 편집진과 필자를 구성하는 방법은? 그의 '민변홍보브로셔'의 제작이 필요함

(6) 대외협력사업

대외협력사업의 의의와 목표는 무엇인가? 모든 단체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제한한다면 어떤 원칙하에? 대외협력사업의 성격을 민변의 위상에 조응하여 구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 함

(7) 한·일법률가 교류 사업

교류의 의의와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인 전망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교류 여부 및 교류대상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8) 기획사업

정세의 변화 및 민변의 현황을 실사구시하며 민변의 장기적 전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9) 성명 발표 등 기타 일상 사업

대변인을 없애고 사무국이 성명 발표 등 대변 기능 수행. 잦은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성명서의 남발로 민변의 성명서가 그 권위를 잃게 된다는 지적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지 민변에서 의견을 발표해야 하는가 하는 비판이 회원들간에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6월부터 9월까지 발표된 성명을 살펴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없는 듯 함. 문제는 성명의 빈도가 아니라 시의성, 내용의 우수성 및 성명서를 언론사에 팩스전송만으로 끝내지 않고 민변의 입장을 일반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함

(10) 소결

변호사단체로서의 정체성 논의 및 장기적인 전망 연구 필요, 조직사업의 강화, 변론의 목표 정립과 기능의 고도화, 사법관련 사업의 부진 탈피, 효율적인 홍보사업의 전개, 전망에 입각한 대외협력사업의 수행 등이 요구됨

나. 인권단체 차원

(1) 인권단체로서의 민변에 대한 논의 필요

- 민변은 인권단체이어야 하는가? 민변은 단순한 변호사단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정치적 시민사회단체로 나아가야 하는가?
- 어떤 인권단체이어야 하는가?
- 다른 인권단체와는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가? 인권재단이나 인권센터 건설을 민변의 조직 목표로 할 수는 없는가?
- 현재 민변은 인권단체인가? 인권단체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2) 10주년 기념사업

단순한 기념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인권사업으로 발전시켜 10주년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인권운동의 전개, 인권단체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 10주년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것인가 다른 인권단체와 연대할 것인가

(3) 국제연대사업

인권협 사업이 주요한 사업으로 되어 독자적이고 장기적인 국제연대사업을 하기에는 벅참. 민변을 넘어선 국제연대사업의 통합이 필요하지 않은가. 장기적 전망하에 국제인권분야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회원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함

(4) 소결

변론활동, 국제연대사업, 대외협력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인권단체로서 자리잡아 가기 위한 본격적인 인권사업은 부족함. 국제연대위원회와 독립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담당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떨런지

다. 법률전문가단체 차원

(1) 전문가단체로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가

-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재야 법조인으로 족한가
-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 노동, 언론, 환경, 경제정의, 사회복지 외에 통일문제, 여성문제, 정치 및 지방자치 등에 관해서도?
- 어떻게 가능한가? 민변 조직활동 속에서 회원들의 전문화가 가능한가 아니면 전문성은 회원 개인의 몫인가?

(2) 상설특위 평가

- 상설특위의 2중적 성격의 조화 필요 - 민변 현재 사업의 역할분담 수행 + 장기적인 전문역량 구축
- 전문역량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수립 - 외부전문인력과의 교류 틀 마련
- 회원들의 참여 유도

라. 민주사회단체 차원

(1) 민주사회단체로서의 민변?

- 현재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현재의 민주진영의 형편 및 인적 관계상 당분간 민변은 단체로서 또는 회원 개인으로서 민주사회단체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음
-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명실상부한 독자적 사회운동단체로 서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의미는?

(2)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사업

8개 단체가 노사관계공대위를 만드는데 민변이 일조함. 그러나 현재 8개 단체 틀이 흔들리고 있음. 8개 단체 틀을 계속 유지하고 참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의미는? 8개 단체 틀에서 민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참가자로 있으면 족한가 아니면 적극적인 기획 및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가? 과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3) 5·18사업과 과거청산운동

5·18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위를 개편보강하고 전담 실무자를 둔 점, 피해자 진술을 해낸 점, 지속적인 항소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점, 민변 주도하에 "5·18사업의 방향

에 관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대들을 구성한 점 등은 성과임. 5·18 사업을 과거청산문제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는바 어떻게 할 것인가

(4) 쌀보내기 사업과 통일운동

쌀 보내기 사업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이었나 아니면 민간 통일논의 활성화라는 차원도 내포하고 있었나? 통일운동에 민변은 어떻게 관계해야 하나? 한총련에 대한 입장은?

(5) 정치와 민변

민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선거와 관련된 현실정치가 아닌 제도개선 및 정의를 위한 광의의 정치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내년 대선에 대한 태도는?

마. 조직 평가

(1) 집행위원회 - 상임위원회 - 사무국 구조? 대표자(회장) - 사무처 - 국·실 구조?

(2)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

(3) 사무국

- 상근변호사 문제
- 사무국·차장의 역할과 권한
- 실무간사의 역할과 권한, 변호사와의 관계, 인원
- 아르바이트생, 자원봉사자 문제
- 자료실 및 자료분석팀

(4) 상설특위의 조정 문제

3.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사업과 조직의 재구성 방향

가. 현단계에서의 민변의 위상 및 장기적 전망과 그에 입각한 사업의 추진 방향

- (1) 변호사단체 : 기본적 위상. 집행위, 상임위 및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수행. 중진 회원들

- 의 참여가 필요함. 장기적인 연구·기획 요망
- (2) 인권단체 : 가능한 장기적 전망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 독자적인 담당 조직 단위 필요
- (3) 법률전문가단체 : 일단 각 상설특위를 개편·강화하여 전문성 있는 회원 확보 및 조직적 역량 축적에 노력함으로써 전문가단체로의 발전을 시도해 볼 것. 분야(특위)별로 유관 외부단체 및 인사와 협력관계 구축
- (4) 민주사회단체 : 2개 차원(총체적 사안, 개별적 사안)으로 나누어 전자는 사무국이, 후자는 특위 등 소속 단위조직 내지 회원 개인이 수행
- (5) 지속적인 평가·연구 : 변호사단체를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 3가지 방향 중 어느 것이 강화될 것인지는 현실적 성과에 달렸음.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 작업이 필요함

나. 민변의 위상에 비추어 부진한 사업

(1) 회원조직사업

- 회원의 민주적 의사 결집 및 단결 사업, 조직관리사업의 기획, 실천
- 회원 동질성 강화 관점에서 각종 인쇄매체 및 통신사업의 재검토

(2) 사법관련사업

- 변호사단체로서 사법 및 법조 관련 대응 미약 : 사법관련 사업 대상의 확정
- 문제되고 있는 새법안·개정안 점검하여 각 조직단위에 평가작업을 배분하고 종합하여 민변 명의로 대응
- 사법개혁·사법감시 문제 장기적 연구가 긴요함 : 사법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공동으로 연구팀 구성

(3) 인권사업

- 인권단체로서의 장기적 전망에 관한 회원간의 합의 및 역량 투여, 계획 수립 필요성
- 인권변론사업의 고도화 : 한총련 변론 및 변론메뉴얼 출간을 계기로 변론의 전형을 창출 - 변론사업 총괄보고서 작성, 변론단위 구성, 변론 결과물 정리 작업 추진
- 인권사업의 체계적 점검 및 단계적 추진 : 인권관련 고발 및 상담, 변론, 인권실태 조사, 인권기획소송, 인권선전·홍보, 인권교육, 인권출판, 인권정책연구 및 인권법제개선, 국제 인권연대, 인권이론 연구 및 인권단체연대 등

- 독립적인 인권사업 총괄 담당 조직단위 필요 : 사무국 산하 인권실 또는 상임위원회의 인권위원회
- 10주년 기념사업의 인권사업화
- 다른 인권단체와의 상설 연대 테이블 구성 : 예컨대 인권상황평가회의 등
- 장기적인 국제인권사업 수행 위한 회원 훈련

(4) 법률전문가 단체로서의 사업

- 상대적으로 사업이 요구되는 특위에 사업 요구 : 노동위의 노동법개정 계속 담당, 환경위의 환경기획소송 제기, 언론위의 언론개혁 문제제기와 연대
- 여성위원회, 통일위원회, 정치 및 지방자치위원회 신설 : 장기적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대외적 사업보다는 공부 단위로 운영 - 1년 후 1개의 큰 사업 설정해 놓고 그를 위하여 이슈 파악,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 자료 확보, 세미나 등
- 상설 조직 단위로 다루기 힘든 사안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위 구성
- 과제와 기간(1년 정도)만 정하고 예산지원(예컨대 자료수집비, 외부전문가 협력비 등)하면서 자율적 운영
- 가능한 상설 조직 단위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연구가능한 위원, 지원자, 외부 인력으로 현실성있게 구성
- 경제·노동연구팀(별도 구성), 통일연구팀(통일위 신설), 대선 및 지방자치연구팀(정치 및 지방자치위 신설), 사법개혁연구팀(기획위와 사법위), 인권센터 구성 연구팀(인권실 또는 인권위 신설) 등

(5) 8개단체사업

- 8개단체 틀 복원 노력 : 노동법 개정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사업 설정 위하여 각 단체 별도 접촉, 민변의 요구 준비, 다른 단체의 요구 최대한 수용, 각 단체별로 독자적 관계 강화
- 민변이 적극적으로 조정 및 실무 기능 담당

(6) 5·18사업

- 항소심 관련 변호사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 모니터링, 판결 평석 등
- 과거청산으로의 사업 확대 - 파트너 단체 찾기

(7) 자료정리사업

자료실의 자료정리사업 강화 필요

다. 조직 구성 및 운용의 문제

(1) 회원위원회

회원위원회의 실질적 구성 - 간사 문제, 기수별 간사로 위원 구성 등

(2) 사법위원회

- 사법위원회를 상임위로 두고, 위원을 전임 간부 등 중진으로 구성하여 법안·사법제도·법조 관련 이슈 파이팅·인터뷰·기고 등 적극 대응케 하고 변협 등 다른 법조단체와의 교류할 수 있도록 - 젊은 회원의 경우 위와 같은 일을 해내기에는 부적절하여 공백이 생긴 민변 중진들이 개인 자격으로 기고하거나 다른 법조단체에서 일하는 현상 주목
- 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담당 분야를 적절히 나누어 잦은 모임 없이 위원장이나 간사가 안전 보내어 각자 처리하도록 운영
- 사법위원회 간사로 역량있는 젊은 회원 배치하여 사무국과의 공조하에 정보 및 자료 수집하여 중진들에게 제공,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는 각 상설특위에 배당

(3) 대외협력위원회

- ①명분 및 관계상 소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사업 ②변호사단체로서 민변이 담당할 역할이 있어서 참가해야 할 사업 ③사법제도, 법조관련 등 사업 ④전문성을 가지고 참가해야 할 사업 ⑤민변이 독자적인 의미를 두고 추진하거나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계획에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음 ①②는 대외협력위원회가, ③은 사법위원회가, ④는 각 상설특위가, ⑤는 임시특위 및 사무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대외협력위원회 자체에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연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위 역할분담에 따를 때 세밀한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있고 명망이 있는 시니어 회원 및 외부 단체에 관계하는 회원들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4)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와 자료분석팀 및 실천 조직 단위간의 결합 방안

(5) 상설특위

- 각 상설특위의 2중적 성격의 조화 필요 - 민변 현재 사업의 전문적 수행 + 장기적인 전문 역량 구축

- 각 특위에 따라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 추진하되, 전문역량 갖춘 회원 양성에 중점 들 것
- 각 상설특위위원장 및 사무국 간담회 개최 : 위원장의 구상 듣고 논의할 필요성

(6) 사무국

사무국 내의 업무 재조정 및 업무수행방식 개선 필요

(작성일 : 1996. 10. 26)

● 무죄사건변론집 홍보

모임에서는 형사(무죄)사건 변론자료집 제작을 기획하여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죄사건변론집에 담을 내용으로 선정된 사건은 『강기훈, 홍성담, 박충렬, 김기웅, 배병성, 이지문, 김보은, 이문옥, 이창복, 이도행 사건』등입니다. 이 자료집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필자, 집필방법 등을 확정하였고 년 내 발간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입회원이 바라본 민변

김석연

1. 들어가는 말

민변에 가입한지 이제 겨우 8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종합법률사무소와 더불어 민변이 있었기에 그나마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희망과 가슴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속에 하루하루를 소비하면서도 민변회원들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변이 더욱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변회원들이 케네디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민변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내가 민변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을까 하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속에서도 웬지 모를 불안감이 교차하는 이유는 과연 앞으로도 민변이 지금까지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세계는 지금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이후 자본주의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전세계를 정글의 법칙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시대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 앞에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굴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에서는 패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아니 정글의 법칙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가 마르도록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치열한 생존본능을 누가 감히 나무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광고의 홍수속에 파묻혀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돌아볼 여유도 또 나와 내 가족이라는 존재 이외의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가져볼 기회도 없이 미친 듯이 소비하며 앞만 보고 살아가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더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강요받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어느 뇌물공여 재벌총수의 이야기처럼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왕회장의 말처럼 강자만이 당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역사는 결코 패배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김대통령의 생사관은 이 시대 가치의 최고봉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 사회와 이웃에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우리 민변은 김대통령의 말처럼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민변변호사들도 어느새 먹고 살아가는 바쁨을 핑계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 따뜻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민변에도 유행을 따라 경쟁논리를 도입해서 자신을 단련시켜야 되는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변에 대하여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제게 발제를 하라고 한 것은 아마도 어설피게나마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그 느낌을 말해달라는 취지이고, 아직은 내부화되지 않은 신입회원의 신선한 감각이라면 민변에 대해 무모한 비난을 한다해도 이를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있다는 뜻으로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고 몇가지 민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내가 보고 느낀 민변의 모습(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 민변회원이라고 해서 다같은 민변회원은 아니다

민변회원 중에서는 이름만 올려져 있을 뿐 활동은커녕 회비조차 내지 않는 회원에서부터 누가 일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굶은 일을 찾아 무보수로 일을 하는 열성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민변의 취지에 찬성하고 민변활동을 좋게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왜 돈만 내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변은 돈을 끌어모아 무슨 자선사업을 벌이자는 단체도 아니고 또 일반 시민운동단체처럼 회원들이 납부한 돈을 가지고 상근 간사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업을 벌여나가는 단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변은 오직 회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존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회원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회원의 질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느꼈습니다.

나. 민변에는 장기적 관점이 부재하다

민변은 민주사회를 갈망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민주사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함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민변회원 중에는 이미 민주사회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민변활동이 이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로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회원의 마음속을

들여다 본다 한들 과연 민변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회원들이 앞으로 점점 개인주회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객관적이고도 명백합니다. 과거처럼 이십전심으로 전달되는 느낌만 가지고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해가고 또 그러한 방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 명확하다면 민변이 무언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변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개혁방향에 관한 민변 나름의 장기적인 관점 내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민변은 사분오열 내지 고사하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게 될 것입니다. 민변은 사회운동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목단체도 아닌 나름의 의미와 지향점을 가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변은 민변이다라는 동어반복 속에 함축된 의미의 내포와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지금의 상황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장기적 관점이 부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민주사회는 도래하였으니 민변은 이제 해산해야 된다는 슬픈 결론에 다다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민변에는 리더그룹이 없다

민변의 개개회원들은 나름대로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그 출중한 기량을 민변을 위해 쏟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누군가 나서서 하겠지 하는 책임회피적 자세가 민변에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몇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만 헌신하다 보니 지금쯤 그 동력이 소진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과연 다음번엔 누가 사무국장을 자진해서 맡으려고 할까 의문입니다. 민변이 잘 운영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몇몇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방식의 일구조를 바꾸어 민변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각종 사업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더그룹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변 조직이 이원화될 염려도 없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회원들의 개인적 자발성에만 의존해서는 조직을 관리하고 사업을 기획, 배치하는 일을 올바르게 해나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 민변은 독자적인 정책기획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민변이 벌여나가는 사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한 사업들 중에는 민변이 어쩔 수 없이 담당하게 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권단체로서의 민변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를 인권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변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일해왔다가 보다는 사전 뒤통수치기 또는 이슈중심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과 관

련해서도 그 시야가 형사사법적 영역을 중심으로한 사법절차적 영역에 많은 관심과 역량이 투여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변이 변호사단체인 이상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변 변호사는 보통의 변호사와는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위와 같이 인권의 영역을 스스로 법률가적 영역으로 제한하여 파악한다던가 또는 사업방식에 있어서 사건 따라잡기식이나 외부하청식 또는 법률적 뒤통수치기를 담당하는 방식에 만족한다던가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변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민변이 독자적인 정책연구역량이 부족하고 책임감있는 리더그룹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민변에 우리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 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하에서 자유권 위주로 활동해왔던 관성이 변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민변이 향후 우리사회의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진정한 인권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권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운동단체만큼은 못되더라도 민변 나름대로 현재 및 미래의 상황을 분석,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사업을 배치해나감, 미래의 사업을 준비하고, 또한 각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 선후관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 능력을 가진 주체를 민변내에서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화에 대하여도 개개의 변호사의 노력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변이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추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민변에는 회원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다

민변에 가입하고도 도대체 민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민변회원이면서도 민변에 대한 소속감이나 아이덴티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변이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에 대해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민변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변이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고 느껴지고 회원들이 민변활동에 대해 귀찮게 생각하거나 단순히 의무감에서 어떤 일을 한다던가 하는 현상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 민변의 조직구조가 실질적인 사업위주로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민변조직이 실질적인 사업구조위주로 조직이 구성되고 능력과 의지에 따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회원이 배치되고 있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일을 꾸려나가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발언권과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어느 회원에게 맡기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회원의 능력과 더불어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의

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변의 조직구조 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부분은 없는지, 단순히 명분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일정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인지, 각각의 책임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대충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부분은 없는지, 또 기존의 관행이나 명분에 얽매어 형식만 있지 실질은 없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민변도 효율성,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벌여나가는 실질적인 조직구조와 정확한 사업기획 및 평가구조를 갖출 수 있을 때에만 향후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자기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민변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민변이 향후 인권단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 하고, 또 민변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자료구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료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변이 일해온 방식이 이러한 자료축적에 기초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특위활동이 민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애매하다

현재 민변이 특위활동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민변 전체 차원에서 특위위원장이나 간사 또는 개개회원에겐 전반적으로 방임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사회가 더욱 다양화되고 인권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다양한 영역에 대해 민변이 향후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이나 제도개선책 모색, 그때 그때의 이슈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민변활동중에서 특위활동의 위상과 비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책연구기능 및 전문화를 뒷받침해줄 실무간사역량이 부족하다

현재 민변간사들은 매우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팩스를 보내고 받는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하는 잡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실무간사들이 민변의 정책연구능력의 강화, 전문화, 적극적 기획능력 강화, 자료의 정리와 축적, 타단체와의 연대기능 강화등에 있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으로 실무간사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 회원들의 사무실 통합노력이 부족하다

개인사무실보다는 적절한 규모의 합동사무실이 민변활동을 비롯한 변호사의 시간활용에 있

어서 유리하다고 할 때 향후 민변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변회원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러한 약조건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규모로 사무실을 통합하여 사무실의 안정성을 높이고 개개 변호사들의 시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운동이 적극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민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3. 끝맺는 말

저의 생각은 말 그대로 하나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사실 민변에 대해 잘 모르는 저로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만 몇가지 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발제자의 한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 인권침해사건과 사고가 있는한 그러한 문제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더라도 우리 민변의 존재의의는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과거의 민변이 얻었던 명성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만으로 민변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래의 객관적인 상황이 불투명하고 비판적이기까지 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민변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스스로의 길을 가기 위해 민변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성일 : 1996. 10. 26)

신착논문자료모음

<경제>

경영혁신으로서의 신기업문화 개발에 관한 연구 : H사의 신기업문화 개발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ew corporate culture as a management innovation / 이준희 저. - 서울 : 한국의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국제경영학과, 1996. (iii) [144] p. : 표, 도 : 26cm

기업인수 합병(M&A)의 전략에 관한 연구 : 금융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 strategies in the banking industry / 강창수 저. - 서울 : 한국의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무역학과, 1996. (vi), 126 p. : 표, 도 : 26cm

부실기업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ediction model of corporate financial distress / 이광석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재무회계전공, 1996. (viii), 89 p. : 표, 도 : 26cm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 of the nonbusiness organizations : focus on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 오정수 저. - 서울 :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1995. v, 104 p. : 표 : 26cm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y method of the small business / 정문관 저. - 서울 : 명지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전공, 1995. iv, 85p. : 표, 도 : 26cm

자본구조의 산업별 차이 및 기업성과 분석 : 제품 및 구매자 특성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industrial variation and business management result in the capital structure :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buyers / 이재권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관리전공, 1996. vii, 67 p. : 표, 도 : 26cm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 : 플라스틱 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promotion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 김만기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중소기업론전공, 1996. viii, 70p. : 표, 도 : 26cm

칠레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vatization program of the public enterprises in Chile / 최진우 저. - 서울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중남미지역연구학과, 1996. (iii), 110 p. : 표, 도 : 26cm

한국기업의 대동남아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s to Southeast Asia / 정홍원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재무관리전공, 1996. iv, 76p. : 표, 도 : 26cm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pensionsystem in korea / 김승렬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전공, 1996. viii, 124 p. : 표 : 26cm

한국의 적정 국방비에 관한 고찰 : 2001년의 군사력 건설비용 중심으로 = A Study about the proper

defence expense in Korea : focus on expense for constructing the military power in 2001 / 최진학 저. - 서울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안보정책전공, 1996. iii, 88 p. : 표 : 26cm

<국제>

라인란트를 둘러싼 독-프의 이해관계와 유럽통합 : 1945년부터 1963년 독-프 협력조약 체결까지 = The Franco-German relations in Rhineland and European integration / 황선해 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서구지역학과, 1996. iv, 104 p. : 표, 도 : 26cm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민족분규에 관한 연구 : 종교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 The International conflict in Bosnia-Herzegovina / 정창화 저. - 서울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동구지역연구학과, 1996. (ii), 83 p. : 도 : 26cm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 An Economic analysis on the import foreign workers / 한성수 저. - 서울 :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1995. iv, 117 p. : 표, 도 : 26cm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석 : 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Analysis of current peacekeeping operations : problems and solutions / 박한빈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국제정치전공, 1996. vi, 102 p. : 표, 도 : 26cm

일본방위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탈냉전시대 일본방위정책의 변화에 따른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Japanese defense policy :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crease of international rol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Japanese defense policy in the era of post-cold war / 김선철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96. (ix), 130 p. : 표 : 26cm

지구화(globalization)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democracy / 김홍식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96. (vii), 83 p. : 26cm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북한의 교정책에 관한 연구 : 핵문제를 중심으로 = America'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 centered on the nuclear problems / 장성민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96. (xi), 100 p. : 표, 도 : 26cm

<노동>

건설업계의 교육훈련 실태와 교육훈련욕구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actice and need analysis of training programs in construction industry / 김윤배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인사노무관리전공, 1996. ix, 119 p. : 표, 도 : 26cm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 유현민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산업노동학과 노동법전공, 1996. v, 121 p. : 표 : 26cm

근로자의 참여적 노사협의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bor-management council for the workers' participation / 조영길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동법학과 노동법제전공, 1996. vii, 158 p. : 표, 도 : 26cm

기업의 채용관리 효율화에 대한 연구 : 국내의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정립 = A Study on effective recruiting management at enterprises : setting up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nalysis of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enterprises / 서춘현 저. - 서울 : 명지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경영정보학

과 경영정보학전공, 1995. iv, 125 p. : 표, 도 : 26cm

용역대여로서의 파견근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problem of dispatched labor as service loan / 서항욱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산업노동학과 노동정책전공, 1996. x, 167 p. : 표, 도 : 26cm

자동화 설비의 도입이 작업자의 직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influence of automation on job attitude of the workers / 박정희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중소기업전공, 1996. (iv), 78 p. : 표 : 26cm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ful limitation of labor disputes / 정연문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산업경제학과 산업경제론전공, 1996. vii, 122 p. : 26cm

정부투자기관 임금체계의 특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H]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 The Wage system of the government invested institutes in Korea : their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improvement ideas / 이성수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인사노무관리전공, 1996. vi, 57 p. : 표, 도 : 26cm

종업원의 노조전념도가 노동관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건설회사 중기 기능직 노조원을 대상으로 = Influence of employees' union commitment upon the stability of labor relations : a case of heavy equipment field in construction companies / 박태웅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관리전공, 1996. vii, 91 p. : 표, 도 : 26cm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fair labor practice remedy system in Korea / 이주학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동법학과 노동법제전공, 1996. v, 102 p. : 26cm

항만하역노동의 합리화 방안 = A Scheme for rationalization of harbor loading labor / 김운용 저. - 서울 : 한국의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해운경영학과, 1996. v, 76 p. : 표, 도 : 26cm

<사법>

건축규제수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of architectural control means and their improvements / 김종보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감정평가전공, 1996. iii, 104p. : 표 : 26cm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 : 명의신탁의 폐해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nt-a-title system(Myungeui Shintak) and real name registration act / 조성래 저. - 서울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관리전공, 1996. iv, 110 p. : 표, 도 : 26cm

부동산 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ing measures of tax system for real estate / 김영길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감정평가전공, 1996. v, 129 p. : 표, 도 : 26cm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역대한국국회의원선거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 stressing on the election results of Korea's national assemblymen / 황길곤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한국정치전공, 1996. viii, 196 p. : 표, 도 : 26cm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택지개발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for problem of land use policy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district / 김봉락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

원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감정평가전공, 1996. v, 156p. : 표, 도 : 26cm

한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 법 행정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dastral system of Korea : the cases of regulation,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 이범관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도시관리전공, 1996. xi, 194 p. : 표, 도 : 26cm

<사회복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생활보호사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수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life protection beneficiaries and the reform measures for living protection programs : Suso longterm rental apartment, Suso-dong, Kangnam-gu, Seoul / 옥영자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ii, 115 p. : 표 : 26cm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책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countermeasure of child abuse / 이영은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 101 p. : 표 : 26cm

유아기 특수아동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grate instruction of exceptional children in the early childhood. / 한선화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i, 83 p. : 표, 도 : 26cm

유아방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of child neglect : focused on th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day care center / 김성은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 79 p. : 표 : 26cm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ay of fixing of housing policy / 주남수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관리전공, 1996. vi, 141p. : 표, 도 : 26cm

취업 간호사의 육아 및 탁아요구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 Reformative method of welfare institution for hospital nurses and nurse officers / 황춘신 저. - 광주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1996. (iii), 84 p. : 표 : 26cm

한국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c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 이순신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i, 64 p. : 표 : 26cm

한국보호시설아동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of Korean institute children welfare / 정동명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 89 p. : 표 : 26cm

한국산업복지의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노동인간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for realization of the industrial welfare in Korea : focusing on the humanization of work in small business / 문병주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ii, 134 p. : 표, 도 : 26cm

한국에서의 지역개발행정체제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조직 인력 재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 with the focus on organization, personnel and finance / 조영규 저. - 서울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6. iv, 105 p. : 표, 도 : 26cm

한국의 언어장애인 복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eech and language disorder welfare in Korea /

장학수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 94 p. : 표 : 26cm

한국의 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 중계3동 시영3단지 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vating In-Home services of Korea / 이형권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vii, 81 p. : 표 : 26cm

효율적인 유치원 경영에 관한 연구 : 시간관리 및 행사프로그램 관리를 중심으로 = Study on efficient administration of a kindergarten : especially on schedule and event program management / 김명현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인사노무관리전공, 1996. iv, 92p. : 표 : 26cm

<언론>

한국공영방송의 운영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management state of Korea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the way of development / 김광석 저. - 부산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95. 72 p. : 표, 도 : 26cm

한국의 영화관실태와 영화 배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dition of the cinema theater and film distribution in Korea / 이준수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1996. iv, 71p. : 표 : 26cm

<환경>

농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rmland system / 이준길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관리전공, 1996. v, 150p. : 표, 도 : 26cm

대도시 교통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ome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of urban transportation system / 조익제 저. -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관리전공, 1995. iv, 98 p. : 표, 도 : 26cm

도시 환경시설의 지역분쟁에 관한 연구 : 군포시의 비선호 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tional conflict of urban environment facilities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wanted public facilities in Kunpo city / 임구원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사회개발전공, 1996.

수도권 교통행정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ing of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capital region / 임병길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1996. v, 85 p. : 표, 도 : 26cm

우리나라 항만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role of provincial government for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Korea / 서용병 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해운경영학과, 1996. iii, 86p. : 표, 도 : 26cm

환경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act affected to economy by the environmental restriction / 김재석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1996. vi, 84 p. : 표, 도 : 26cm.

<기타>

교통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그 공간적 함의에 관한 연구 : 할인전문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implication with the new structural change of distribution industry : the case of discount store, price-club and E-Mart / 김기영 저. - 서울 : 단국

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도시관리전공, 1996. (ix), 117 p. : 표, 도 : 26cm

미국의 대한 방위비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 심재천 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북미지역연구학과, 1996. (xii), [108] p. : 표, 도 : 26cm

북한의 대미 [신평화보장체계] 수립제외에 관한 일고찰 : 전략적 의도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ew peace guarantee system" proposal to the U.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trategic intention / 김관경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학과 남북한관계전공, 1996. vi, 66 p. : 26cm

우리나라 비서직 종사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in secretarial jobs / 성명숙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관리전공, 1996. x, (78)p. 표, 도 : 26cm

유럽연합(EU)법 수용에 대한 15개 회원국들의 입장과 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ttitudes of 15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in incorporating EU law and its perspective / 정창화 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구지역연구학과, 1996. iv, 130 p. : 26cm

조직내 권력유형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perceived supervisory powers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문수모 저. - 서울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관리전공, 1996. vi, 86 p. : 표 : 26cm

조직의 정보기술 상황적 특성이 정보기술 아웃소싱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IT contingent characteristics on the IT outsourcing decisions / 고석용 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1996. iv, (81) p. : 표, 도 : 26cm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 강효선 저. - 서울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안보정책전공, 1996. (iv), 111 p. : 표 : 26cm

탈냉전 시대의 중국의 동북아 현상유지 정책 : 한중수교와 북한의 NPT탈퇴선언 사례를 중심으로 = China's pursuit of status quo in Northeast Asia in the era of post cold war : in view of the R.O.K. - P.R.C. :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96. x, 102 p. : 표 : 26cm

한국 관광EVENT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ow to activate the tourist events / 김성일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 관광경영전공, 1996. iv, 106p. : 표 : 26cm

한반도 군비통제 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arms control police in Korean peninsula / 정동락 저. -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행정학과 안보행정전공, 1996. vi, 113 p. : 표 : 26cm

구 영화법 위헌결정에 즈음한 민변의 견해

지난 10. 4. 헌법재판소는 구 영화법 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제도에 해당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구 영화법상의 사전심의제도는 현행 영화진흥법에 그대로 계승되어 있는바, 결국 공륜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제도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명시적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이므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전심의제도의 폐지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 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공백기 동안의 심의문제와 새로운 제도는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일정한 방향없이 범람하고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민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민변은 앞서 본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이 결정은 이찌면 너무나 당연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원리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나, 여전히 다양한 영역과 매체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사회적·예술적 상황에 일정한 준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견해는 헌법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즉, '시기상조'라 함은 검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 단계에서 검열을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는 견해로 이해될 수 있는바, 현행 헌법하에서는 검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검열철폐가 정말 시기상조라면 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개헌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 헌법이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검열제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깊은 체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우려 또는 비판의 목소리중 상당수는 '포르노전문관'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음란물의 유통과 번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다. 현행법상 음란물의 유통이나 상영등은 현행 형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사법처리될 것이므로 우리 사회가 '음란'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영화의 유통이나 번성은 검열이 철폐되더라도 적어도 합법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사법처리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일반영화관에서 상영이 부적절한 영화들이 있을 수 있는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광고등의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의 감수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상업적인 번성도 견제하지는 것이 바로 '등급외상영관'제도인 것이다.

셋째, 현재 정부와 영화업계 일부에서는 공륜이 검열을 하지 않는 대신 계속하여 등급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륜은 위헌적인 검열행위를 오랫동안 맡아온 기관으로서 등급심의를 있어서도 그러한 역사적·조직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재의 결정의 취지를 그 본질에서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급심의를 인간의 완전한 자율기구에 맡기거나, 만일 인간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인간의 자율성이 담보되고 국민의 평균적 감수성을 충분히 그리고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심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유해한 음란물, 폭력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그러한 견해는 그 자체로는 경청할만한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완전등급제를 실시하더라도 어차피 청소년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된 영화만을 상영하도록 될 것이므로 상황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규제를 어기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들은 지금도 다소간 존재하며 그것은 언제나 문제되고 있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따름이지 검열제도의 철폐와는 무관한 것이다. 도리어 완전등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영화를 일부 장면만 잘라내서 청소년들에게 합법적으로 관람시켜온 관행을 시정할 여지가 있고, 또한 위법하지는 아니하나 상당히 유해할 수 있는 영화들을 행정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는 등급외상영관에서 한정적으로 상영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가 법에 따라 시행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음란하거나 폭력적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영화를 무책임하게 상업적으로 상영하려는 일부 영화인의 태도에 대하여도 우려를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워온 독립영화인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맞게 일정한 자유를 구가하는 것은 마땅하나, 새로운 제도에 의하더라도 등급의 영화관에서만 상영되거나 실정법의 제재를 받아 마땅할

지도 모를 음란성 또는 폭력성에 있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영화들을 공백기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상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몰각하는 비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전개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많은 영화인의 노력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음란성, 폭력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평균적 감수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영화들의 무분별한 상영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의 자중을 촉구하는 바이다.

영화검열의 철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표현매체 중 가장 영향력있고 대중적인 매체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언론사 및 예술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민변은 그 정신의 요체가 다양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확산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위와 같이 그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1996.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5·18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하여

5·18시민학살 피해자 진술권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강길조씨 1인의 신청만 허용하고 김준봉씨 등 4인의 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우리 사회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범죄피해자 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단순한 증인신문과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신청시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석할 수 없음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상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기각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위 4인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5·18시민학살 피해자 수는 신청인 5인외에도 1,000여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을 최소한으로 줄여 5인으로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5·18학살의 동기 및 경위가 항소심재판의 쟁점이 된 현재, 위 신청인들은 그 현장의 체험자이면서 각각 그 체험사실이 다르므로 5·18학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술을 듣는 것은 최소한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1심 재판과정에서는 5·18학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이와 관련하여 신청한 증인 17명중 피해자는 이양현씨 1인이며, 기타 객관적 증언을 기대할 수 있는 이는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영택씨 정도에 불과하다.

1심의 소준열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안부용, 이제원 등은 전두환 등과 함께 내란 또는 내란목적살인죄로 고소당한 자로서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전두환 등과 함께 법정에서야 마땅하므로, 이들이 기소되지 않은 이상 진실에 입각한 증언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점은 증인들이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을 비호하고 학살의 책임을 광주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진술로 일관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실제진실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소인들을 전원 기

소하여 준엄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므로 검찰은 마땅히 나머지 관련자를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이며, 재판부로서도 증인이 한편으로 취우치는 것을 막고 가능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5·18학살 피해자들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길을 최대한 허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이 학살의 진상을 낱알이 밝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길이 후손에 남겨줄 역사적 재판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재판부는 재판의 역사적 의의에 맞게 기각결정을 재고하여 범죄피해자진술신청을 전원 허용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1996년 10월 1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교회인권센터

모임에서는 지난 10월 14일 고등법원 형사1부(형소심 재판부)에 피해자진술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신청한 사람은 김준봉, 김동원, 김기수, 정수만, 강길조 등 5인이며 이 중 강길조 1인에 한해서 피해자 진술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사회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피해자 진술권이 행사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는 신청한 피해자 진술권이 나머지 4인에 대해서 기각된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내었습니다. 이번호에 실게된 자료는 피해자진술권 신청서와 피해자진술권거부처분에 관한 재항고장입니다.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단체

참조 : 편집국장(보도국장), 사회부장, 관련담당자

제목 : 안두희씨 살해 박기서씨 관련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민변의 입장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백범 김구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와 관련한 기사에서 근일 일부 언론들이 우리 모임과 관련하여 허위기사를 사실확인도 없이 게재하고 있어 우리 모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1. 사실과 다른점

- (1) 모임의 명칭 : 일부 언론이 우리 모임을 민주변호사협회(민변)라고 칭한 점 -> 우리 모임의 명칭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임
- (2) 민변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점 -> 민변의 변론방침은 일단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변론요청이 있을 경우에 논의를 거쳐 수임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아직까지 정식 변론요청이 없었음
- (3) 장기욱 전국회의원이 민변소속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점 -> 장기욱 변호사는 현재 민변의 회원이 아니며, 민변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적도 없었음
- (4) 민변이 민족정기구현회, 천주교인권위 등과 석방대책위원회를 공식발족키로 했으며, 석방을 위한 전국순회서명운동과 가족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점 -> 민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단체나 대책위 등에 가입하거나 이의 구성을 논의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민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2. 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우리 모임의 신뢰를 훼손한 언론사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31일 이전까지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1996. 10.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